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

지역주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,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5년 4월 1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지정취지

성북구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

2. 지정일자 : 2015. 4. 1

3. 금연구역지정대상 : 성북구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(총434개소 불임참조)

※ 향후 마을버스 정류소 신설·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지정

4. 금연구역지정범위 : 성북구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

5.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

○ 과태료 부과시기 : 2015. 7. 1

○ 과태료 부과금액 : 10만원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(☎02-2241-59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